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2432 |
|----------|-------|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의자 : 김영진 · 허영 · 이학영

유기홍 · 신동근 · 이개호

최종윤 · 이정문 · 진성준

노웅래 · 조오섭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사고 및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사고유출수 또는 강우 시 초기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에 곧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완충저류시설은 2004년 ‘함안철서 완충저류시설’을 시작으로 준공되기 시작하여, 초기 준공 시설은 운영기간이 20년에 가까워지고 있음. 유사시설인 공공하수도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임을 고려하면 시설·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공하수도의 경우 주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진단 절차가 부재하여 시설·설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에 따라 처리시설의 적기 정비 등을 통해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나, 폐수를 해당 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폐수관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매설되어 교체 · 정비 없이 사용 중인 것이 대부분으로, 2021년 기준 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인 폐수관로가 전체의 45.6%(약 940km)임. 노후 ‘하수관로’의 사례를 고려할 때, 노후화가 심화될 경우 폐수의 누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한 운영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진단 범위를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로 확대하고 현재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 ·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상향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되어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다.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인 사업자 등이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하기 전

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자(시행자)에게 배수설비에 유입될 오·폐수의 수량·수질에 관한 사항을 승인 받도록 함(안 제51조제3항·제4항 신설).

라. 배수설비설치·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전에 시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행자는 배수설비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5항·제6항 신설).

마. 배수설비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행자가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51조제7항·제8항 신설).

바. 준공검사 이후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관리자가 시행자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51조제9항 신설).

사. 배수설비설치·관리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누수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4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설치 · 운영”을 “설치 ·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을 “운영,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

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하기 전에 미리 시행자에게 배수설비에 유입되는 오 · 폐수의 수량 · 수질 등에 대하여 승인(이하 “오 · 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오 · 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오 · 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  
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수설비 설치 ·  
관리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옥내(屋内)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  
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 · 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유지 · 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  
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  
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  
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⑨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 시행자는 배수설비설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된 경우
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 이전·철거 등 장

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제4호의2 중 “기술진단”을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증설 전에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교체 및 주요부분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자

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준공연도가 5년 이상 경과한 완충저류시설  
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br>· 관리) ① · ② (생 략)<br><br><u>&lt;신 설&gt;</u> |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br>·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br>음)<br><br><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br/>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br/>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완충저류<br/>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br/>한다.</u><br><br><u>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br/>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br/>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br/>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br/>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br/>다.</u><br><br><u>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br/>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와 제<br/>4항에 따른 개선계획 및 개선<br/>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환경<br/>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br><br><u>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br/>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br/>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br/>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u> |
| <u>&lt;신 설&gt;</u>   |  |
| <u>&lt;신 설&gt;</u>   |  |

|   |  |
|---|--|
| <p>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u>설치</u> · <u>운영</u>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기준 및 <u>운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u>공공폐수처리시설</u>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u>공공폐수처리시설</u>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p><u>관</u>"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대행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p> <p>⑦ -----<br/>-----<br/><u>설치</u> · <u>운영</u> 및 관리-----<br/>-----<br/>-----.</p> <p>⑧ -----<br/>-----<br/>-----<u>운영</u>, <u>기술</u> 진단의 대상 및 내용, 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br/>-----<br/>--.</p> <p>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br/>-----<u>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u>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r/>-----<br/>-----<br/>-----</p> |
|---|--|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④ · ⑤ (생 략)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  
-----.  
② -----  
-----기술진단전문기관-----  
-----  
-----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라 한다)는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하기 전에 미리 시행자에게 배수설비에 유입되는 오 · 폐수의 수량 · 수질 등에 대하여 승인(이하 “오 · 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시행자가 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배수설비설치·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오·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 설>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수설비설치·관리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옥내(屋内)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배수설비설치·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배수설비설치·관리자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현행 제3항과 같음)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 ·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⑫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① 시행자는 배수설비설치 ·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

<신 설>

|                   |   |
|-------------------|---|
|                   | <p><u>변경, 개·보수, 철거 등 필요<br/>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u>1.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br/>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u></p> <p><u>2.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br/>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br/>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된 경<br/>우</u></p> <p><u>3.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br/>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br/>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u></p> <p><u>② 시행자는 배수설비를 사용<br/>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설<br/>비를 접속하는 등의 행위로 배<br/>수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br/>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br/>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의<br/>이전·철거 등 장해 제거에 필<br/>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
|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 <p>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 략)</p>   |
|                   | <p>1. ~ 4. (현행과 같음)</p>   |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 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  
-----

5. ~ 8.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증설 전에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설치(교체 및 주요부분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3의4.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3의5.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  |  |
|--|--|
| <p><u>&lt;신 설&gt;</u></p> <p>4. ~ 6. (생 략)<br/>④ (생 략)</p> | <p><u>을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br/>사용한 자</u></p> <p><u>3의6.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br/>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u></p> <p>4. ~ 6. (현행과 같음)<br/>④ (현행과 같음)</p> |
|--|--|